

##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案(代案)

提案年月日：1999年 12月 日

提 案 者：行政自治委員長

### 1. 代案의 提案經緯

가. 1999年 11月 18日 邊精一議員外 112人으로부터 發議된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안과 秋美愛議員外 102人으로부터 發議된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件的 制定法律案을 각각 廢棄하고 그 내용을 하나의 制定法律案으로 입안하여 委員會代案을 提案하기로 합의함.

나. 第208回國會(定期會) 第10次 行政自治委員會(1999.12.16)에서 法案審查小委員會 委員長의 審査報告를 듣고 小委員會의 審査結果를 받아들여 이들 2件的 法律案을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委員會代案을 提案하기로 議決함.

## 2. 代案의 提案理由

濟州4·3事件이 일어난 지 50여년이 흘렀으나 지금까지 政府次元에서 眞相糾明을 위한 노력이나 犠牲者 등에 대한 名譽回復措置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濟州4·3事件의 眞相을 糾明하고 濟州4·3事件과 관련된 犠牲者와 그 遺族들의 名譽를 회복시켜줌으로써 人權伸張 및 民主發展과 國民和合에 이바지하고자 이 法을 제정하려는 것임.

## 3. 代案의 主要骨子

- (1) “濟州4·3事件”이라 함은 1947年 3月 1日을 기점으로 1948年 4月 3日 발생한 騷擾事態 및 1954年 9月 21日까지 濟州道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事件을 말함(案第2條第1號).
- (2) 濟州4·3事件의 眞相을 糾明하고 이 法에 의한 犠牲者 등의 決定과 名譽를 회복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犠牲者名譽回復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두며,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濟州道知事와 關係公務員·遺族代表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委囑함(案 第3條).

- (3) 委員會의 議決事項을 실행하고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事項을 처리하기 위하여 濟州道知事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두며, 實務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濟州道知事が 되고 委員은 關係公務員과 遺族代表를 포함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委員長이 委囑함(案 第4條).
- (4) 犧牲者 및 그 遺族은 濟州4·3事件 犧牲者와 그 遺族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不利益이나 부당한 處遇를 받지 아니함(案 第5條).
- (5) 委員會 혹은 實務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관련 자료의 발굴·열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案 第6條).
- (6) 委員會는 濟州4·3事件真相調查報告書를 作成할 수 있으며, 真相調查報告書 作成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濟州4·3事件真相調查報告書作成企劃團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案 第7條).
- (7) 政府는 濟州4·3事件 犧牲者를 慰靈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平和와 人權을 위한 教育의 場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慰靈祭

禮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慰靈墓域造成, 慰靈塔建立, 4·3 史料館建立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豫算의 범위내에서 支援할 수 있도록 함(案 第8條).

- (8) 犧牲者중 계속 治療를 요하거나 常時 介護 또는 補助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者에게 治療와 介護 및 補助裝具 購入에 소요되는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を 支給할 수 있도록 하되, 支給範圍와 金額의 算定 및 支給方法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함(案 第9條).
- (9) 委員會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이내에 大韓民國 在外公館에 犧牲者와 그 遺族의 濟州4·3事件 관련 被害申告를 접수받기 위한 申告處를 設置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함(案 第11條).
- (10) 濟州4·3事件 당시 戶籍簿 燒失로 戶籍登載가 漏落되거나 戶籍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결정에 따라 大法院 規則이 정하는 節次에 의하여 戶籍에 登載하거나 戶籍의 記載를 正正할 수 있도록 함(案 第12條).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 관한 特別法案

第1條 (目的) 이 法은 濟州4·3事件의 真相을 糾明하고 이 事件과 관련된 犧牲者와 그 遺族들의 名譽를 회복시켜줌으로써 人權伸張과 民主發展 및 國民和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濟州4·3事件”이라 함은 1947年 3月 1日을 기점으로 하여 1948年 4月 3日 발생한 騷擾事態 및 1954年 9月 21日까지 濟州道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事件을 말한다.
2. “犧牲者”라 함은 濟州4·3事件으로 인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者 또는 後遺障礙가 남아있는 者로서 第3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濟州4·3事件의 犧牲者로 결정된 者를 말한다.
3. “遺族”이라 함은 犧牲者의 配偶者(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및 直系尊卑屬을 말한다. 다만,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이 없는 경우에는 兄弟姊妹를 말한다.

第3條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 ①濟州4·3事件의 真相을 糾明하고 이 法에 의한 犧牲者 및 遺族의 審査·決定 및 名譽回復에 관한 事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濟州4·3事件 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심의·의결한다.

1. 濟州4·3事件 眞相調査를 위한 國內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犠牲者 및 遺族의 審査·決定에 관한 事項
3. 犠牲者 및 遺族의 名譽回復에 관한 事項
4. 眞相調査報告書 作成 및 史料館 造成에 관한 事項
5. 慰靈墓域 造成 및 慰靈塔 建立에 관한 事項
6. 濟州4·3事件에 관한 政府의 立場表明등에 관한 建議事項
7.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戶籍登載에 관한 事項
8. 기타 眞相糾明과 名譽回復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③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濟州道知事와 關係公務員·遺族代表를 포함하여 學識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委囑한다.

④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條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犠牲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 ①委員會의 議決事項을 실행하고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事項을 처리하기 위하여 濟州道知事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犠牲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實務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處理한다.

1. 犧牲者와 遺族의 被害申告 접수에 관한 事項
2. 피해신고에 대한 調査에 관한 事項
3.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の 支給에 관한 事項
4. 기타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事項

③實務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濟州道知事が 되고 委員은 關係公務員과 遺族代表를 포함하여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委員長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④實務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條例로 定한다.

第5條 (不利益 處遇禁止) ①누구든지 濟州4.3事件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證言할 수 있다.

②犧牲者 및 그 遺族은 濟州4.3事件 犧牲者와 그 遺族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不利益이나 부당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6條 (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蒐集 및 分析) ①委員會는 그 構成을 마친 날부터 2年 이내에 資料의 蒐集 및 分析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委員會 또는 實務委員會는 第1項의 資料蒐集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 또는 團體(이하 이 條에서 “關聯機關 또는 團體”라 한다)에 대하여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關聯機關 또는 團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關聯機關 또는 團體는 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發掘 및 閱覽을 위하여 필요한 便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政府는 第2項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資料를 外國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政府와 성실히 交渉하여야 한다.

第7條(眞相調査報告書 作成) 委員會는 第6條第1項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 부터 6月이내에 濟州4·3事件眞相調査報告書를 作成하여야 하며, 眞相調査報告書作成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濟州4·3事件眞相調査報告書作成企劃團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第8條 (慰靈事業) 政府는 濟州4·3事件 犠牲者를 慰靈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平和와 人權을 위한 教育의 場으로 활용하며 慰靈祭禮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費用을 豫算의 범위 내에서 支援할 수 있다.

1. 慰靈墓域 造成
2. 慰靈塔 建立
3. 4·3史料館 建立
4. 慰靈公園 造成
5. 기타 慰靈關聯事業

第9條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 ①政府는 犠牲者중 계속 治療를 요하거나 常時 介護 또는 補助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者에게 治療와 介護 및 補助裝具 購入에 소요되는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を 支給할 수 있다.

②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を 支給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擔保로 提供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③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の 支給範圍와 金額의 算定 및 支給方法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犠牲者와 그 遺族의 申告處 設置 및 公告) 委員會는 이 法 施行 日부터 30日이내에 大韓民國 在外公館에 犠牲者와 그 遺族의 濟州4·3事件 관련 被害申告를 접수받기 위한 申告處의 設置를 요청하고, 設置된 申告處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1條 (戶籍登載) 濟州4·3事件 당시 戶籍簿 燒失로 戶籍登載가 漏落되거나 戶籍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결정에 따라 大法院 規則이 정하는 節次에 의하여 戶籍에 登載하거나 戶籍의 記載를 正正할 수 있다.

##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